

제 호

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

1. 상 호 명(기관명):
2. 사업자등록번호:
3. 소 재 지:
4. 대 표 자:
5. 지정의 유효기간: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6제4항 및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의7제
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